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 항 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박 재 완

● **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를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제1항제5호 중 “주식등의 가액”을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나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제24조제4항 중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을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특수관계자와의”를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를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합병하는”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을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를 “분할로”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제46조의4제3항 전단 중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을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합병(이하 “적격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을 “자산 처분 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4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자법인(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를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제50조제1항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를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관계자와”를 “특수관계인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제57조제4항 중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를 “금액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법인”을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로 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제76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를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76조제7항 전단 중 “제164조의2에 따른”을 “제164조의2에 따라”로,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을 “그 제출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를 “징수하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를 “발급한 계산서등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제76조제9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제76조제9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제76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76조의8제6항제1호 중 “합병(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합병만 해당한다)”을 “적격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할(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만 해당한다)”을 “적격분할”로 한다.

제76조의1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76조의12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3제3항제2호 중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을 “적격분할합병”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1항제4호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2, 제1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완전자법인이 되기 전”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으로 한다.

제76조의18제4항 중 “해산”을 “해산(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제외)”)를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를 각각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경우”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92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93조제10호자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를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제76조”를 “제76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중 “제93조제10호”를 “제93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으로, “제76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98조의2의 제목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를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의5제1항 본문 중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의 규정”을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으로,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를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제9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주주등의 명세서”로 한다.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병하는”을 “적격합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을 “적격분할합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의2제3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시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9조제2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를”을 “특수관계인을”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8호, 제20조제2호,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 제75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8조의5제1항 본문(“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무액면주식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아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모자법인 간 합병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적분할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신고하는 내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하지 아니한 계산서 또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15조(연결자법인의 배제 및 연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1항 단서 및 제76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1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8조(중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중간신고기한이 끝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9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등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93조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3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주등의 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는 설립신고부터 적용한다.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법인세 세율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7조(건설이자의 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법정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0조(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5호,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안 제42조의2 신설)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함.

다. 과세특례 대상에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합병 포함(안 제44조제3항)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발생하는 자산 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함.

라.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 내용을 법률에서 정함(안 제46조제2항제1호각목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적격분할 요건(‘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안 제55조제1항)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안 제57조제4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그동안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개선하여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사.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76조제3항 신설)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아.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안 제76조의12제1항)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98조의6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